

제 호		
<b>[ ] 배출가스저감장치</b> <b>[ ] 저공해엔진</b> <b>반납확인증명서</b>		
반납 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	소유자 성명	연락처(전화번호)
	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번호	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모델명
	차대번호	장치 부착(개조) 연월일
	소유자 주소	
반납 사유 ([ ]에 √표시)	[ ]폐차 또는 폐기 [ ]수출 [ ]사고·재해·도난, [ ]천연가스버스 대차 [ ]저공해차 대차 [ ]기타 ( )	
반납 내용 ([ ]에 √표시)	반납 일시	반납 장소
	반납 장치 제작사명	반납 방법 [ ] 현물 [ ] 금전
	반납 장치명 및 부품종류: [ ] 매연여과 장치(DPF) 및 [ ] 자기진단 장치 [ ] 산화촉매장치(DOC) [ ] 저공해엔진([ ] 베이퍼라이저/인젝터, [ ] 믹서/쓰로틀바디, [ ] 촉매, [ ] 엔진제어장치(ECU/ECM))	
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79조의5제4항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반납되었음을 확인합니다.		
년 월 일		
<b>특별시장·광역시장· 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</b>		
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orange; display: inline-block; padding: 10px;">직인</div>		